

의안번호	제 393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6년 5월 31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3
----------	-----

제출연월일 : 2016. 5. 31.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과 사무 직원을 두도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335호, 2015. 6. 22. 공포, 2015. 12. 23. 시행)됨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를 정원관리 단위기관으로 정하고, 존속기한이 도래한 한시정원을 삭제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변경함

나.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단위기관 신설 및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3)

1)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총정원: +7명(일반직 4급 1명 포함)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총정원: 2,914명 → 2,907명(△7명)

다. 한시적으로 책정된 “위 프로젝트 사업 전문상담사” 정원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른 정원 삭제

1) 교육행정 8급: 17명(안 별표 4)

라.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보임직급에 맞게 직급 조정(안 별표3): 3·4급(△4) → 3급(+4)

3. 참고자료

가. 관계법령: 별첨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16. 5. 6. ~ 2016. 5. 25.): 별첨
-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제2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914명”을 “2,907명”으로 한다.

1.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 7명

제5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150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2,898	-			
3급	5		5		
4급	19	1	17	1	
5급 이하 소계	2,861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연구사 소계	12	-			
교육전문직원 계	236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4		23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02	-			
별정직 계	3	-			
5급 상당 이하 소계	3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p>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150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신 설></p> <p>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2,914명(제 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p> <p>3. (생 략)</p> <p>제5조(한시정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 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한시정원은 별표 4와 같다.</p> <p>[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계</th> <th>본청 (직속기관 포함)</th> <th>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th> <th>공립 각급학교</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3,150</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1</td> <td></td> <td></td> </tr> <tr> <td> 교육감</td> <td>1</td> <td>1</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2,898</td> <td>-</td> <td>-</td> <td>-</td> </tr> <tr> <td> 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r> <tr> <td> 3·4급</td> <td>4</td> <td>4</td> <td></td> <td></td> </tr> <tr> <td> 4급</td> <td>19</td> <td>18</td> <td>1</td> <td></td> </tr> <tr> <td> 5급 이하 소계</td> <td>2,861</td> <td>-</td> <td>-</td> <td>-</td> </tr> <tr> <td> 전문경력관 소계</td> <td>13</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 계</td> <td>12</td> <td>-</td> <td>-</td> <td>-</td> </tr> <tr> <td> 연구사 소계</td> <td>12</td> <td>-</td> <td>-</td> <td>-</td> </tr> <tr> <td>교육전문직원 계</td> <td>236</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150	-	-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2,898	-	-	-	3급	1	1			3·4급	4	4			4급	19	18	1		5급 이하 소계	2,861	-	-	-	전문경력관 소계	13	-	-	-	연구직 계	12	-	-	-	연구사 소계	12	-	-	-	교육전문직원 계	236	-	-	-	<p>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p> <p>제2조(정원의 총수) ----- ----- -----</p> <p>1.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 7명</p> <p>2. ----- ----- 2,907명 -----</p> <p>3.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p> <p style="text-align: center;">(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text-align: left;">기관별 직급별</th> <th>총계</th> <th>도의회 사무처</th> <th>본청 (직속기관 포함)</th> <th>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th> <th>공립 각급학교</th>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3,150</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 교육감</td> <td>1</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2,898</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3급</td> <td>5</td> <td></td> <td>5</td> <td></td> <td></td> </tr> <tr> <td> 4급</td> <td>19</td> <td>1</td> <td>17</td> <td>1</td> <td></td> </tr> <tr> <td> 5급 이하 소계</td> <td>2,86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전문경력관 소계</td> <td>13</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 계</td> <td>1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연구사 소계</td> <td>1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교육전문직원 계</td> <td>236</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4급 상당 이상</td> <td>34</td> <td></td> <td>23</td> <td>11</td> <td></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150	-	-	-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2,898	-	-	-	-	3급	5		5			4급	19	1	17	1		5급 이하 소계	2,861	-	-	-	-	전문경력관 소계	13	-	-	-	-	연구직 계	12	-	-	-	-	연구사 소계	12	-	-	-	-	교육전문직원 계	236	-	-	-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34		23	11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150	-	-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2,898	-	-	-																																																																																																																																												
3급	1	1																																																																																																																																														
3·4급	4	4																																																																																																																																														
4급	19	18	1																																																																																																																																													
5급 이하 소계	2,861	-	-	-																																																																																																																																												
전문경력관 소계	13	-	-	-																																																																																																																																												
연구직 계	12	-	-	-																																																																																																																																												
연구사 소계	12	-	-	-																																																																																																																																												
교육전문직원 계	236	-	-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150	-	-	-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2,898	-	-	-	-																																																																																																																																											
3급	5		5																																																																																																																																													
4급	19	1	17	1																																																																																																																																												
5급 이하 소계	2,861	-	-	-	-																																																																																																																																											
전문경력관 소계	13	-	-	-	-																																																																																																																																											
연구직 계	12	-	-	-	-																																																																																																																																											
연구사 소계	12	-	-	-	-																																																																																																																																											
교육전문직원 계	236	-	-	-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34		23	11																																																																																																																																												

현 행					개 정 안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소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소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02		-			202				-
별정직 계		3		-			3				-
5급 상당 이하 소계		3		-			3				-

[별표 4]

<삭 제>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표(제5조 관련)

단위기관	종류	직렬	직급	정원	존속기한	비고
교육지원청	일반직	교육행정	8급	17	2016.6.30.	위 프로젝트(Wee Project) 사업 전문상담사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5.6.22.] [법률 제13335호, 2015.6.22., 일부개정]

제29조의3(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① 시·도의회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시·도의회회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6.11.] [대통령령 제25375호, 2014.6.11., 타법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18조(한시정원)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하여 조정할 수 없다.

- 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3.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④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입법예고 결과 검토 의견

민원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검 토 의 견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곽은기	별표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4급을 복수직급으로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중앙도서관장은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당연히 사서직으로 임명해야 함을 위반하면서 직급을 상향하면 법률의 취지와 사서직의 전문성을 전혀 살릴 수 없어 매우 부당함 ○ 2015년 교육부의 충북교육청 조직분석 결과를 보면 상위직급 비율이 4.63%로 타 도지역에 비해 가장 높아 상위직급 확대의 명분이 없고, 총액인건비 부담 가중을 초래하므로 매우 부당함 ○ 3급 정원 확대 보다 10년 이상 장기결원 상태인 시설관리직렬 108명을 충원하여 학교시설관리 및 교육활동지원을 강화하므로써 학교와 학생의 안전을 도모하고 현장중심의 교육문화, 차별없는 교육공동체 실현에 기여할 필요성이 더욱 긴요하다고 판단됨 ○ 일반직 전체 직급별 평균 정원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전환직렬은 관행에 따라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극심하게 차별적으로 하위직급(8급 이하 70%)에 치우쳐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례 별표2”의 기준은 전국 평균 이상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으며,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을 위해서라도 전환직렬(비사무직)의 직무가치를 존중하는 풍토 조성 및 차별해소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반대”	<p style="text-align: center;">“미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임직급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정원채정승인),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정원 승인 신청 서류)에 따라 일반직 4급 이상과 교육전문직원 중 본청의 과장담당관 이상, 교육지원청의 국장 이상, 직속기관의 부서장(일반직 4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의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정원 책정의 적정성,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정원을 기구정원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반영하여 운영하여야 함 - 금회 개정하는 3·4급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3급으로 이미 승인받은 직위로 4급을 3급으로 직급상향하는 사항이 아님 *2013. 2. 22.자 시·도교육청 조직 정원 담당자 회의 시 승인받은 직위에 대하여 기구·정원 자치법규 개정 지시: '13.7.1.자 기구규칙 개정완료 후 미개정 상태인 정원 조례를 금번 개정하려는 것임 ○ 중앙도서관장 사서직 보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별표1)에 따라 행정, 세무, 전산, 교육행정, 사회복지, 사서, 속기, 방호 등 행정직군의 3급은 직렬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금회 정원조례 개정 내용과 관련 없음

민원인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검 토 의 견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p>○ 시설관리직렬 신규충원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관리직렬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중 *금회 정원조례 개정 내용과 관련 없음 <p>○ 정원책정기준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책정비율에도 직급별 정원이 못 미치고 있어 책정비율 상향의 실효성이 부족함 - 상위 직급 책정은 총액인건비 부담 증가를 초래해 교육환경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